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38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57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경제 파급효과, 창조성,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중 온라인 교육학원업 및 기타 기술·직업훈련학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으로 5개 업종을 신규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

나. 법 개정예 따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범위가 종래의 연계형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단독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 일반적 형태의 기술개발로 확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4554, Fax : 042-472-34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중 “연계형 기술개발”을 각각 “기술개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연계형 기술개발”을 “기술개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연계형 기술 개발</u> 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u>연계형 기술 개발</u> 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u>연계형 기술개발</u>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연계형 기술개발</u>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u>기술개발</u> 지원의 절차 등) ① -- ----- <u>기술개발</u> 에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술개발</u> 에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u>기술개발</u> 을 ----- ----- ④ ----- <u>기술개발</u> ----- ----- -----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법 제11조에 따른 <u>연계형 기술개발</u> 지원 7. ~ 9. (생 략)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기술개발</u> ----- ----- 7. ~ 9.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3. .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업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비고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